

「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노인건강 증진 및 노인복지증진, 복지관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경로식당운영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탁 필요.
- 노인 건강 유지 및 복지의 일환으로 경로식당의 공공성이 강조되며, 민간위탁을 통한 식당 운영의 노하우 기반으로 경로식당 운영의 경제성·효율성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함.

3. 주요내용

- 사 무 명: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
- 추진근거
 - 노인복지법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
 -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(시설의 운영)
- 위탁사무: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시설개요
 - 소 재 지
 - 구미본관: 구미시 산책길 51
 - 선산분관: 선산읍 선산중앙로 117

- 규모 및 지원시설
- 본관: 284.66㎡(식당 : 168.5㎡, 주방 : 84.9㎡, 다용도실 : 31.26㎡)
- 선산분관: 246.7㎡(식당 : 120㎡, 주방 : 87㎡, 다용도실 : 8㎡, 기타 : 31.7㎡)

○ 위탁기간: 2024. 1. 1. ~ 2026. 12. 31. (3년)

○ 위탁조건

- 식 단
 - 1일 1식(중식)을 제공하고 매월 식단표를 위탁자에게 통보
 - 1국 4찬 이상으로 구성하고 4찬중 1찬이상은 육류 또는 생선류를 포함하여 성인 기준 열량과 영양소를 갖춘 식단 구성
- 식 자 재
 - 식재료 원가는 급식단가의 50%이상 사용
 - 구미관내 생산 친환경 인증쌀 사용
 - 가공식품을 제외한 식자재 중 도내 생산 식자재 85%(금액 대비) 이상 사용
- 운영시간 및 급식단가

구 분	중 식
운영시간	11:00 ~ 13:00
급식단가	3,500원 (65세미만 3,500원 자부담, 65세이상 1,500원 자부담,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무상)
참 고	○ 65세이상 어르신은 2,000원,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은 3,500원을 예산 지원 ○ 65세미만 어르신은 전액 자부담 ○ 예산지원금은 당월말일 대상자별 이용식수를 확인한 후 청구에 의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○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

○ 운영경비 부담기준

구미시청(노인종합복지관)부담	위탁운영 업체부담
▷ 주방설비 및 집기 - 집기는 식탁, 의자 ▷ 각종 공과금 - 전기, 냉·난방, 상·하수도, 도시가스 ▷ 건물유지관리비 ▷ 식당설비 및 기계 수리 등 장비유지 보수비	▷ 인건비, 식재료비, 피복비 ▷ 소모품비, 수선비, 일반 및 잔반처리비 ▷ 음식물배상책임보험 ▷ 경로식당 청소관련 사항 전반

※ 명시되지 아니한 제비용은 위탁업체 부담 원칙, 부담 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

○ 수탁자 선정방식

- 공개모집,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, 협상에 의한 계약
 - 심의위원 7명 구성(전국 공개모집, 관련분야 전문가/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, 대학 전임강사 이상 전공자, 지방공기업 5급 이상 직원 등)

○ 소요예산(산출근거): 연간 432,250천원(시비 100%)

4. 참고사항

- 관련 법규: 「노인복지법」, 「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- 2023년 제2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“적정”

사진대지

□ 구미분관



□ 선산분관

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‘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’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노인건강 증진 및 노인복지증진, 복지관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경로식당운영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- 집행기관에서는 어르신들이 고른 영양섭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식단관리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, 향후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적정한 식사단가를 통한 양질의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.